


| | | | |
|---|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|
|  | 학과장회규정 | 규정번호 | 3-8-35 |
| | | 제정일자 | 1997.03.01. |
| | | 개정일자 | 2023.05.01. |
| | | 개정차수 | 4차 |
| | | 소관부서 | 교무처 |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 학과장회(이하“학과장회”라 한다.)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학과장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
2. 교육방법 및 평가에 관한 사항
3. 시험 및 성적평가에 관한 사항
4. 입학 및 성적에 관한 사항
5.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
6.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3조(구성) ① 학과장회는 총장, 교무처장, 입학홍보협력처장, 학생성공처장, 산학협력처장, 전략기획처장, 각 학부장 및 학과장으로 구성한다.

② 의장은 총장이 되고, 부의장은 교무처장이 된다.

제4조(의원의 임기) 의원의 임기는 당해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의장의 직무) ① 의장은 회무를 관장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.

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회의) ① 학과장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.

② 학과장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서기) 학과장회는 의원 중 1인을 서기로 둔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7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8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1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 년 5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